

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중 "보사환경국장", "사회과장", "복지계장" 을 각각 "사회복지국장", "사회복지과장", "사회복지계장" 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.